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 정 2021년 9월 28 일

개 정 2022년 3월 18 일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브룩필드 그룹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운용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에

부터 받는 금전

나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투자결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

다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 등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수수료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,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지급

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,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③ 각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, 법 시행령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하다.

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운용, 집합투자증권 판매, 투자자문계약 등 상품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, 법의 규정,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시중에 출시된 유사 상품의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여 내부상품협의체에서 결정한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, 필요한 경우,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③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④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계산방법,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6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, 투자자문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1.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,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2. 투자자문계약의 경우는,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공시 등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

야 한다.

제10조(협회에 대한 통보)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 <2021. 9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3. 18 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.